

새해부터

## 送達料 銀行통해 收納 大院 規則마련 올해부터 實施

大法院은 구립 19日 送達料 처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大法院규칙 제982호)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特許上告事件을 비롯한 特許再審事件등에 관한 送達料를 납부하고자 할 때는 大法院長이 지정하는 送達料수 납은행(大法院의 경우는 전국의 조홍은행: 관리은행은 조홍은행 덕수지점)에 현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이 규칙은 1988年 1月 1일부터 실시한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이다.

### 적용대상 사건

特許上告事件(후), 特許再審事件(재후) 등

※여기서 特許再審事件의 사건부호는 종전의 『후』에서 지난 2月 27일 공표된 大法院 규칙 제959호에 의해 4月 1일부터 『재후』로 변경됨.

### 납부 의무자

特許上告事件 등의 사건에 관한 送達料는 민사소송규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고·상소인등 당해 짐급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당사자가 이를 예납하여야 한다.

### 납부 절차

당사자가 송달료를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大法院長이 지정하는 送達料 수납은행(대법원은 전국의 조홍은행이며, 관리은행은 조홍은행 덕수지점)에 현금을 납부하고 수납은행으로부터 送達料납부서, 사건번호등록표, 송달료영수증 각 1통을 교부받아야 한다.

납부인은 送達料납부서, 사

건번호등록표 각 1통을 소장등 서면에 첨부하여 관할法院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사건과에서는 사건번호의 부여와 사건배당 절차가 완료되면 사건번호등록표에 법원코드, 파코드등을 지정하여 자체없이 이를 大法院長이 지정하는 송달료 관리 은행에 통보하고, 수급계산표를 정리하여 송달료납부서와 함께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辦理士試<sup>ム</sup>委員會 구성 委員長에 國示特<sup>ム</sup>研修院長

特許廳은辦理士法 시행령이改正·公布됨에 따라辦理士試驗委員會를 구성하고 委員長 및 委員을 각각 통보했다.

辦理士試驗委員會 委員長은 大統領令 第12277號에 의거 종전 特許廳 次長에서 國際特許研修院長으로 변경됐으며, 이와 관련 同法 시행령 第3條의 규정에 따라 9名의 委員 및 간사 1명을 위촉, 통보했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 委員長: 李炳均(國際特許研修院長)

▲ 委員: 崔鍾洛(特許廳企

劃管理官) · 李相元(〃管理局長) · 金淳(〃審查 1局長) · 金裕采(〃審查 2局長) · 李氣盛(審判所長) · 金英華(抗告審判官) · 庚麟鳳(國際特許研修院教授部長) · 金泰潤(〃教授) · 田峻恒(大韓辦理士會 會長)

▲ 간사: 鄭東瑩(國際特許研修院企劃課長)

한편 委員會 委員중 抗告審判官 1人은 抗告審判所長이 지명 토록 했으며,辦理士法 시행령 第4條 第2項의 규정에 의한 同試驗委員會 委員長의 직무대행은 教授部長이 代行 토록 했다.